##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9386

제안연월일: 2025.3..

제 안 자 : 농람축산식품해양수신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0495호)	이병진의원	2024. 6.14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8.26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5544호)	전종덕의원	2024.11.14.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 (2025.1. 9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

- 가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26.)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나.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3. 6.)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·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,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가 수산업·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4호).
- 나.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,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·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·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 안에 관한 사항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5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·어촌 영향 등 평가)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· 평가(이하 "기후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·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

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.
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 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계	제7조(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계
획 등의 수립) ① (생 략)	획 등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
	<u>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</u>
	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<u>5.</u> ~ <u>7.</u> (생 략)	<u>6.</u> ~ <u>8.</u> (현행 제5호부터 제7
	호까지와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35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수산
	업·어촌 영향 등 평가) ① 해
	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
	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
	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
	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
	성을 5년마다 조사·평가(이하
	"기후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하
	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
	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
	<u>한다.</u>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 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 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수산업·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 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 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 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

## 령으로 정한다.